

부 령

● **기획재정부령 제170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으로 한다.

-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제4조제1항 관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제15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경쟁입찰 등이 아닌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재산 매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입찰이 성립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6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2조·제14조·제24조·제25조·제37조·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